

유비쿼터스기술 응용연구센터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09.6.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유비쿼터스 기술응용연구센터 규정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유비쿼터스 기술응용연구센터라 칭하고,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내에 둔다. 센터의 영문 명칭은 Ubiquitous Technology Application Research Center(UTAC)이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유비쿼터스 기술응용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직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RFID와 Sensor Network 분야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연구
2. SCM/ERP/PLM 분야의 이론 및 응용연구
3. RFID/USN/SCM/ERP/PLM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체 연구원의 계속교육
4. 정부·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수행
5. 기타 국외 대학, 기업 및 센터와의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수행

제4조 (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해당분야 연구실적을 고려해 총장이 임명한다. 부센터장은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5조 (조직)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에 연구부, 연구관리부, 운영위원회를 둔다.
2. 각 부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 가. 연구관리부는 시설의 관리, 서무 회계, 출판, 자료수집 등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나. 연구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 다. 연구부는 RFID/USN 분야의 이론 및 응용 연구를 수행

제6조 (연구원) ① 센터에 연구위원, 외부연구위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③ 외부연구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 중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④ 연구원은 학사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⑤ 보조연구원은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센터에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센터장, 부센터장, 간사와 6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둔다.
- ③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운영위원은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관련연구기관 및 산업체 인사 등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대학교원,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인사와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연구비 관리)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연구비 관리규정에 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